

I.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과제(지정공모) 공고 계획

※ RFP별 상세 지원 내용은 각 과제별 과제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공고 제2024-005호

2024년도 제2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공고 안내문

2024. 8.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1.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① 사업별 지원규모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 명)	지원규모 (백만원)	선정예정 과제 수	과제구성 요건*	지원기간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수집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8,582.1	3	단독/ 컨소시엄	5년(3+2) 이내 *1차년도 3개월 (24.10.~ 28.12.)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40,135.2	14	단독	

* RFP별 상세 지원규모는 반드시 신청 과제의 RFP 참조

* 컨소시엄에 대한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상이함으로 반드시 신청 과제의 RFP 참조

② 지원 대상

구 분	공고단위 (RFP 명)	지원대상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수집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 공고마감일 기준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2항3호 및 제3조의3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 '의료 데이터셋(CDW등) 구축 및 연구활용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암관리법」 제27조에 의한 기관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 정보 생산, 검체 채취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한 기관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한 기관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건강검진 실적이 본 과제에서 모집하는 기관 당 5년간('24~'28) 모집인원 이상을 만족한 기관(공고마감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기관은 설립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서 상기 기준 만족 필요)

* 소속은 의료기관이나, 과제관리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며, '산학협력단'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추진 일정

○ 2024. 08. 14.	'24년도 제2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과제(지정공모) 제2차 공고, 접수 시작
○ 2024. 09. 13.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 2024. 09. 13.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마감
○ 2024. 09.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 2024. 09. 중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 2024. 09.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 2024. 10. 중	선정평가 실시
○ 2024. 10. 중	평가 결과 통보 및 수정계획서 접수
○ 2024. 10. 말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 ※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과제제안요청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IRIS 매뉴얼'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접속하여 과제신청을 해야 함
 - RFP별 지원자격, 연구개발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 확인 요망
-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시(9.13.(금), 18: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 ※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시간 이후 지원 분야, 연구계획서 본문 등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마감 기한 연장 불가)
- ※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마감 시간 임박 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 요망

II. 신청 요건 및 방법

1. 신청 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 대상은 과제제안요청서(RFP) 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함

1 연구책임자 자격

- 각 과제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 이직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업단에 사전문의 바람

②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 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초과한 연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 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책임자로 신청 제한
- 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종류(주관/공동)에 상관없이 동일 과제제안요청서(RFP) 내 중복 신청 불가

③ 과제구성요건

- 제안요청서(RFP)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고단위 (RFP 명)	구성 구분	구성 내용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 정보 생산. 검체 채취	단독과제 / 컨소시엄 허용 구성	· 참여연구개발기관은 총 3개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 구성 불가 · 위탁 불가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단독과제 구성	· 단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만 가능 · 공동, 위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단독/컨소시엄 연구개발과제 구성요건>

구분	구성도																								
단독과제 구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8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단독 과제 참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0 auto; width: 40%;">주관</div> </div>																								
컨소시엄 허용 구성	<p>○ 본 과제에 연구개발기관은 단독 참여, 복수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단,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가능하나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 구성 시 총 3개 이내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단독 주관 참여</th> <th colspan="4">복수 주관 참여 (2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구성)</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td> <td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1 (공동)</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2</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1 (공동)</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2</td> </tr> <tr>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1</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2</td> <td></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td> <td></td> </tr> </tbody> </table> <p>-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 구성 불가 (단 동일법인 내 의료기관은 각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p>	단독 주관 참여				복수 주관 참여 (2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구성)				주관	주관	주관		주관1 (공동)	주관2	주관1 (공동)	주관2		공동	공동1	공동2			공동	
단독 주관 참여				복수 주관 참여 (2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구성)																					
주관	주관	주관		주관1 (공동)	주관2	주관1 (공동)	주관2																		
	공동	공동1	공동2			공동																			

4 기타 유의사항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 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을 작성·첨부하여 ‘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Single IRB 심의
 - 본 과제는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므로 IRB 심의가 필수임
 - 본 과제는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 측면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단일 IRB 체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함
 - 사업단의 단장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이 지정한 단일 IRB에서 승인받게 되므로,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별도의 IRB 심의가 필요하지 않음. 연구개발기관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이 안내하는 단일 IRB 체계에 따를 수 있도록 약약서를 제출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국가 귀속
 - 본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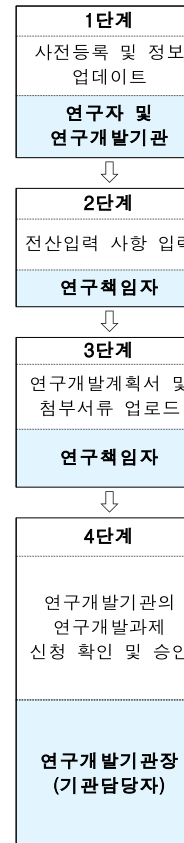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처)

- (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보건의료기술 종합 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 후 화면 중간의 Quick Menu에서 ‘사업공고’ 클릭하여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신청절차)



○ 사전등록 및 정보 업데이트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기관담당자 권한 등에 대한 정보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 등록 된 경우는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필요

○ 전산입력 사항 입력

- 연구개발 과제명, 과제 구성, 요약문,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등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hwp파일) 및 RFP별 첨부서류를 서식에 작성 후 업로드
- 신청완료 후 연구개발계획서 합본 PDF파일* **파본 여부 반드시 확인**
* 전산입력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업로드 hwp파일) + 첨부서류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의 기관담당자는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 내용, 연구비(간접비 등) 및 첨부서류를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가 공동인증서(舊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으로 **과제 신청 승인**
-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담당자가 점검표 체크를 완료해야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가 과제신청 승인 가능

구분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기관담당자 점검표	○	○	연구비 첨부서류 등 확인
기관인증	-	○	전자서명/공문업로드

<주의사항>

- 기관용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포함)는 **범용인증서만 사용 가능**(은행용 등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사용 불가)하고,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 전산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 (www.iris.go.kr - {알림} {과제} {자료실} - IRIS사용 매뉴얼)

▶ IRIS를 통한 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 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③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4.2.29.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RFP(제안요청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개발비 결정 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위탁산산 수수료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공지사항 메뉴 “연구개발과제 위탁산산수수료 안내” 게시를 참조하여 연구활동비에 계상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4.2.29. 개정」[별표 6]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④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이 원칙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4항에 따라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시험·분석·검사·임상 등은 용역연구로 수행가능하며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에 계상. 본 사업은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취득원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6)” 고시 적용하여 산정.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라 계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별표1) 기준에 따라 기관 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해야함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frac{\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text{해당 연구개발기관})\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 + \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 \times 100$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4) 공고단위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분량 및 기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공고 붙임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 접수 시에 모든 서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첨부 문서로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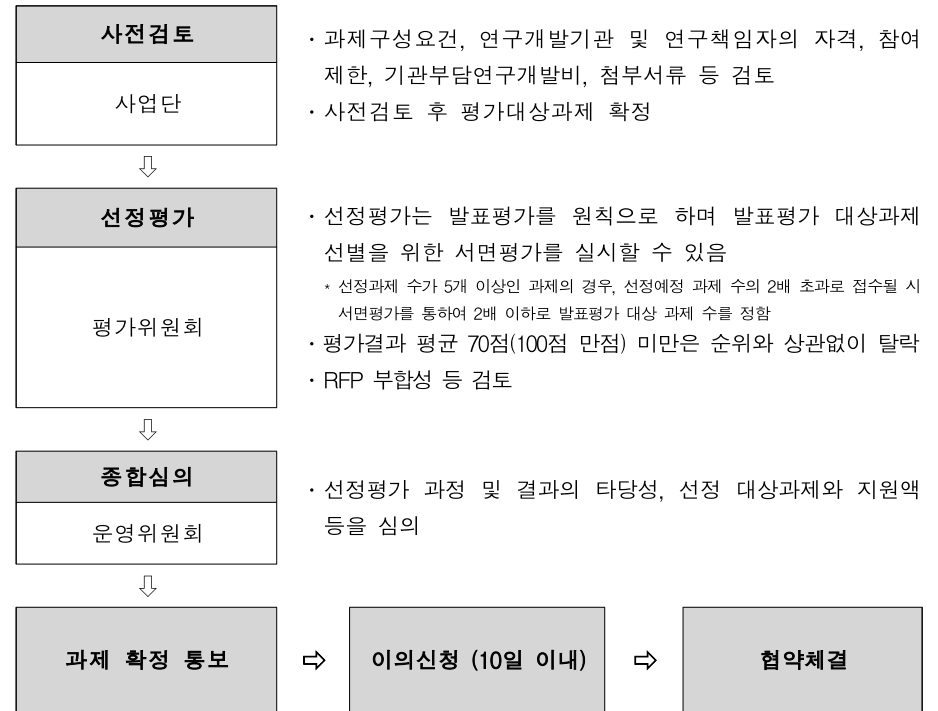
※ 제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미비 시 과제접수 불가

RFP 번호	공고단위 (RFP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제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시	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1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 정보 생산 경제 채취	70페이지 이내 (첨부서류 별도)	9.13.(금) 18:00	9.13.(금) 18:00
2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경제 채취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III. 평가 절차 및 방법

1. 선정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 사업단에서 제출서류, 신청자료, 차별성 등 검토

② 선정평가

- 산,학,연,병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평가
- 평가단 의견에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③ 종합심의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
-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예산 규모 등 조정 가능

④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단은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 이의신청 및 중복성 처리 기준

- (이의신청) 평가결과(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의 이의신청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사업단에서 우선 조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함

*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⑤ 협약체결

- 평가단/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① 평가 방법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과제의 발표평가에 앞서 선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평가 점수는 최종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RFP 번호	공고단위 (RFP명)	평가 방법	서면평가	발표평가	가점	최종점수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경제 채취	발표	-	A	-	A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경제 채취	발표	-	A	-	A

-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경쟁률 공지 시 관련 내용 함께 공지 예정임

*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인 과제의 경우, 선정예정 과제 수의 2배 초과로 접수될 시 서면평가를 통하여 2배 이하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수를 정함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다만,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 평가결과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3.선정 및 협약 [붙임2])에 따른 평가유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함

② 평가 기준

○ RFP 별 평가 기준

-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1. 기관역량 (30)	○ 기관역량 -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역량이 우수한가?
2. 모집체계 (40)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및 운영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모집목표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모집역량 대비 모집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모집기반 - 참여기관의 유사사업 운영 경험이 많은가? - 본 과제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높은가? - 참여자 모집조직 운영 방안이 적절한가?(전담·참여인력 운영방안 포함) - 본 과제 활용 가능시설 및 장비가 적절한가?(공간·동선 운영계획 포함)
3. 동의구득 및 자원확보 (20)	○ 동의 구득 및 자원(검체, 임상정보 등) 확보 및 조직DNA 생산 - 자원확보 표준화 프로세스 운영방안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본 과제 필요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및 이를 위한 기관(혹은 기관 내 정보통신 분야) 협조계획이 우수한가? (전자동의체계 구축·운영, 임상정보 자동추출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연계 운영 등 포함) - 추적조사 세부계획이 적절한가?
4. 위험관리 (10)	○ 위험관리 - 참여자 미확보 시 위험관리계획이 우수한가? - 본 과제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유지방안이 우수한가? - 다 기관 참여시 확보 자원 표준화 질관리 계획이 우수한가?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1. 기관역량 (30)	○ 기관역량 -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역량이 우수한가?
2. 모집체계 (35)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및 운영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모집목표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모집역량 대비 모집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모집기반 - 본 과제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높은가? - 참여자 모집조직 운영 방안이 적절한가?(참여인력 운영방안 포함) - 본 과제 활용 가능시설 및 장비가 적절한가?(공간·동선 운영계획 포함) ○ 본 과제 참여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
3. 동의 구득 및 자원확보 (25)	○ 동의 구득 및 자원(검체, 임상정보 등) 확보 - 자원확보 표준화 프로세스 운영방안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본 과제 필요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및 이를 위한 기관(혹은 기관 내 정보통신 분야) 협조계획이 우수한가? (전자동의체계 구축 운영, 임상정보 자동추출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연계 운영 등 포함) ○ 반복 검진 수검자 검진데이터 확보 및 제공방안 - 반복 검진 수검자의 검진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안이 우수한가?
4. 위험관리 (10)	○ 위험관리 - 참여자 미확보 시 위험관리계획이 우수한가? - 본 과제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유지방안이 우수한가?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IV. 향후 연구사업 관리

1. 협약 변경

①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 입원 등), 퇴직, 부서 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다만,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② 연구기관 변경

- 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 중간보고(연차보고)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를 해당년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함
 - ※ 단계평가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장기지원 과제만 해당
- 사업단에서는 각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검토 후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은 필요 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 ※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및 새로운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범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4. 성과관리

① 연구성과활용 현황의 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장 5년간 제출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등록증 사본, 기타 시제품, 제품화 등)과 이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③ 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

-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범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범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의 재원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H I2 0 C 1 2 3 4).”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National Bio Bigdata Project, funded by four ministr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of Korea (grant number : H I2 0 C 1 2 3 4).”

- 연구종료 전·후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입력함

④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함

V. 문의처

① 홈페이지

- 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② 문의처

- 사업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 과제관리지원팀

구 분	공고단위(RFP)	접수·사업내용(RFP)·평가 일정/절차 안내	
		담당자	연락처
1. 참여자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수집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현애랑	02-789-9723 ohsro2@khidi.or.kr
	일반 국민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이상현	02-789-9722 ford1114@khidi.or.kr
		이미연	02-789-9724 my7101@khidi.or.kr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